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② 사업등록번호(고유번호)	107-82-07595
③ 대표자 성명	장 영 달	④ 공익법인등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gthanbando@daum.net	⑥ 사업연도	2021
⑦ 전화번호	02-720-9373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2013.09.30.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906호(여의도동, 엘지여의도에클라트)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486,068,715	8월	6,042,942	4,518,780	429,716,743
1월	19,931,861	18,210,730	487,789,846	9월	5,907,542	3,090,554	432,533,731
2월	1,773,584	75,071,730	414,491,700	10월	6,141,397	3,790,180	435,240,573
3월	14,749,050	6,356,984	422,883,766	11월	73,282,024	44,356,446	464,166,151
4월	7,024,692	12,934,370	416,974,088	12월	20,311,140	28,943,204	455,534,087
5월	8,080,082	4,240,570	420,813,600	합계	177,136,605	208,026,858	
6월	7,299,099	3,562,250	424,550,449	차기이월	-	-	455,534,087
7월	6,593,192	2,951,060	428,192,581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2021.01.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2020)	1	대한간호협회	10,000,000
2021.01.	2020년도 추모사업 비용정산	1	앤드	13,123,500
연중	추모사업 담당직원 급여 및 보험료	14	박태선 외	36,665,300
연중	2021년도 추모사업 회의식대	15	달개비식당 외	1,305,450
2021.11.	2021년도 추모전시회 준비비	3	임옥상 작가 외	52,601,500
2021.1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활동(광주)	1	(사)따뜻한 사람들	1,600,000
2021.12.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심사비	2	유영표 외	401,000
연중	2022년도 추모행사 실비	22	명동성당 외	5,934,180
연중	김근태기념도서관 위탁운영 관련 비용	5	김근태기념도서관 외	10,335,500
2021.02.	사무소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출	1	(사)민주평화연구소	70,000,000
연중	고유목적 사업추진비 및 수용비	36	오피스디포 외	6,060,428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2021	2020년도 추모사업 비용	100,000	대한간호협회 외	23,123,500
	2021년도 추모사업 비용	500	(사)따뜻한 사람들 외	98,507,430
	김근태기념도서관 위탁운영 관련 비용	1,000	김근태기념도서관 외	10,335,500
	사무소 이전 사업 외	50	(사)민주평화연구소 외	76,060,428
합 계				208,026,858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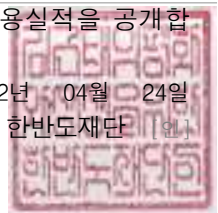
(단위: 원)

⑳ 지출월	㉑ 국가명	㉒ 지급목적	㉓ 지급건수	㉔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㉕ 금액
㉖ 연도별	㉗ 국가명	㉘ 지급목적	㉙ 수혜인원	㉚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㉛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2년 04월 24일

제출인: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 (인)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기(1월~12월) 법인 예시)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⑰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⑱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㉑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㉒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